

#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호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김호진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이은주, 홍성룡, 김상훈, 김춘례,  
문병훈, 안광석, 이영실, 김태호,  
박기재 의원(9명)

## 1. 제안이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높아지고, 대기환경 질 개선에 대한 요구 증대 등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권리와 협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시책 수립에 시민 참여 권리 및 협조 신설(안 제4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, 제7조를 제8조로 하며,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.

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시민의 권리와 협조) ① 시민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추진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시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.

② 시민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통계 및 충전 인프라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③ 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에 노력하고,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 정   안
<p><u>〈신   설〉</u></p>         <p><u>제4조</u> ~ <u>제9조</u> (생   략)</p>	<p><u>제4조(시민의 권리와 협조)</u></p> <p>① <u>시민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추진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시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시민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통계 및 충전인프라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</u></p> <p>③ <u>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에 노력하고,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5조</u> ~ <u>제10조</u> (현행 제4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)</p>